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님!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양천구 제2선거구,
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허 훈입니다.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현행 조례 [별표3]에 규정된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평가기준은 2015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변화하는 정비사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
- 아울러, 현행 조례의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은 특정 평가항목에 비중이 집중되어 있어, 실제 역량과 경험을 갖춘 감정평가법인등이 선정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.
- 이에 본 의원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및 평가 결과의 등록의무를 신설하여 경쟁력을 갖춘 감정평가법인등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,

기존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조정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-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